

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947
----------	-----

제출년월일 : 2025. 4. 30.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창원수목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원수목원에 전망대, 테마정원 및 테마길, 벽천분수 및 바닥분수 등의 야외시설과 전시관 및 관리연구동, 선인장 온실의 실내시설을 둠.
(안 제3조)

나. 창원수목원의 휴원일, 관람 및 입장시간, 입장료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다. 시장이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그 행위를 한 사람과 시설 보수·공사, 재난·재해복구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창원수목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5. 3. 31.~4. 21.)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수목원의 명칭은 창원수목원이라 한다.

② 수목원은 창원시 성산구 삼동동 산14-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수목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시설

가. 전망대

나. 테마정원 및 테마길

다. 벽천분수 및 바닥분수

라. 그 밖의 시설물

2. 실내시설

가. 전시관 및 관리연구동

나. 선인장 온실

제4조(휴원일) 수목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실내시설만 해당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월요일
3.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 및 입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시설: 제한 없음
2. 실내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경우 입장시간은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목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람 및 입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공고 등) 시장은 제4조제3호에 따라 휴원일을 정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람 및 입장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창원시 공보 또는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입장료)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그 행위를 한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2. 상업 목적의 물품 판매 또는 서비스 홍보행위

3. 음주 또는 흡연행위

4.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

② 시장은 시설 보수·공사, 재난·재해복구 등으로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수목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 경비

2. 수목원 조성 및 유지관리

3. 환경미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④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